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98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이학영 · 김상욱 · 김주영
이해민 · 강준현 · 박희승
전용기 · 백선희 · 박 정
염태영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반영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에 실시하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